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6호 2016년 12월 pp.201~225

한국세무학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여부와 관련성* -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

오상옥** · 조광희***

<요 약>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최근 한국 사회에 다시 이슈화되면서, 과거 미국의 Enron,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등의 회계부정을 계기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법적인 책임이 낮은 검토의견제도라는 면에서 미국의 SOX제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차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더 많은 시간을 감사업무에 투입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외부감사인이 입증감사범위를 계획함에 있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 상 중요한 취약점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가능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투입시간이 증가시켰지만 감리지적 가능성을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기업 수준까지 유의하게 낮출 만큼 증가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제도라는 한계점과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연구결과의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인 경우 입증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감리지적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최소한 내

* 본 논문은 첫 번째 연구자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심사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양동훈 교수님, 김갑순 교수님, 조광희 교수님(이상 동국대), 박성환 교수님(한밭대), 오광욱 교수님(고려대)께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박사, oso5457@dongguk.edu, 주저자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phdcho@dongguk.edu,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6년 8월 23일

1차수정일 2016년 11월 9일

2차수정일 2016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3일

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에 있어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입증감사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라는 면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내부회계관리제도, SOX, 감리지적, 감사투입시간, 재무제표 신뢰성, 내부통제

I. 서 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발생한 Enron, WorldCom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하여 미국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 “SOX”)이 제정되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2003년 한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SK글로벌의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건 등 일련의 회계분식 사건들이 발생하며 재무정보 작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4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었다. 강화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재무보고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함께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왔고 SOX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가져다주는 효익이 충분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SOX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법규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은 검토절차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아래에서 인용된 언론보도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된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였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8년 6개월 동안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하루 아침에 3조원대 영업손실을 공시했다. 지난해 초 2만2,000원이던 주가는 연일 하락하더니 1년새 5000원대로 떨어졌고, 소액 주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공동 소송에 돌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절벽’ 사태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 엄중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이 같은 스캔들 때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시아투데이 2016.01.02

“대우건설, 4,000억 분식회계 혐의 중징계 받을 듯”

4,000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받았다……금감원은 회계감리 결과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일보 2015.6.19

위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제도가 2004년 이후로 계속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에서 조명된 최근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우건설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은 사실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절차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실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검토절차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SOX제도와는 달리,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소극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검토의견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차이점이 있다.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의견제도와 비교하여 법적인 책임이 낮은 검토의견제도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검토를 하지 않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목적 관점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이명곤 등 2013; 신현걸 2007).

검토제도라는 차이점 이외에 미국의 SOX제도는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감독기관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피감사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줌으로써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어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국의 SOX제도와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부정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로 불거진 시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과 감사투입시간의 관련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도적인 면에서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 내부통제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비적정 검토의견을 표명한 경우, 감사위험이론 측면에서 적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감사투입시간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두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 경우, 궁극적으로 감리지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그룹을 구분하여 감사투입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입증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독기관 입장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재평가하여 제도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Ⅲ장은 연구모형 및 표본 선정근거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시간,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최승호와 최우중(2010)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상의 중요 취약점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경우 감사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취약점이 감사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감사투입시간과 이익조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현정 등(2011)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별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한 감사위험을 분석하였다. 감사위험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결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요소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회사그룹과 다른 그룹 간에 감사투입시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감사보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인 회사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명곤 등(2008)의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을 대상기간으로 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이 감사시간은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연구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계획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기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에 대한 고려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Hogan and Wilkins(2005)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 입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보수를 더 많이 청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입증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입증절차를 수행한다면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 감리지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관과 백원선(1998)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재무제표 상의 이익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감리에 지적된 기업들에 대하여 재무제표 변수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의 경우 미지적기업과 비교하여 금융비용부담율이 높으며, 전기손익수정손익이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희영 등(2012)은 비정상 감사시간과 비정상 감사보수가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정상 감사시간과 정상 감사보수를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정상 감사시간이 커질수록 감리지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업무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은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감리에 지적될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최정운 등(2014)의 연구에서는 감리지적된 기업들에 대하여 감리지적기업들과 비교하여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리지적기업과 감리지적기업 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이 기업의 감사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감리지적된 기업에 대하여 감리지적 되기 전과 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감리지적 후에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재무제표 재작성, 이익조정, 이익유연화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대응치로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통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감리지적여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대응치와 비교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측면에서 회사의 경영진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있고, 경

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역할 관점에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검토의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3. 가설설정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선행논문이 많이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최근에도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인 한계점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설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SOX 법이 발효된 전후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구축 및 운영, 그리고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상장회사들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Sneller and Langendijk(2007)의 연구에서는 SOX법이 발효된 2004년 첫째 회사의 감사비용이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Hogan and Wilkins(2005)의 연구에서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입증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입증절차를 수행한다면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최승호와 최우종(2010)의 연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경우 감사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검토의견을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은 적발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켜 충분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이라는 감사이론과 선행연구가 있지만,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설 1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적정검토의견과 비교하여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라고 판단하면 적정검토의견인 경우와 비하여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감리지적 가능성)을 적정검토의견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검토의견인 경우와 비교하여 감사투입시간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과 비적정인 기업 사이의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없다.

가설 1의 검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그룹과 적정인 기업그룹 사이에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없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일 것이다. 감사위험이론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일 경우 통제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적발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적발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사투입시간을 충분히 증가시켜 입증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사투입시간 증가시켜야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상황에서는 감사투입시간 증가는 감리지적을 줄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결과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그룹이 적정인 기업그룹보다 감사투입시간이 더 크다면, 이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감사투입시간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한 외부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적절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감리지적)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라고 하여도 적정의견인 기업과 비교하여 감리지적 가능성이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않아서 입증감사절차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인 기업이 적정의견인 기업과 비교하여 더 많은 감리지적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그룹이 적정인 기업그룹과 비교하여 감사투입시간이 더 크면서 동시에 감리지적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연구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 기업이 적정검토의견 기업에 비하여 감사투입시간이 더 크면서 감리지적 가능성도 더 크다면, 이는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인 한계점 때문에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더욱 지지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에 대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못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비적정으로 평가하여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적정검토의견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감리지적)이 더 많다.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검토의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보고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감사투입시간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검토의견인 기업에서 조차도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검토의견 기업에 대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을 적절히 발견하여 실제로 적발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고, 증가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검토의견인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킬수록 감리지적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면,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기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에 대하여 감사투입시간과 감리지적 가능성과의 관련성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비적정검토의견 기업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감리지적)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감리지적)사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과의 관계에서 감사투입시간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관련성이 있다고 검증된 통제변수들을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 및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한다(Krishnan, J. 2005 ; Doyle et al. 2007 ; 박재완 등 2009 ; 손성규와 정기위 2009 ; 김용식과 황국재 2010 ; 손성규 등 2012 ; 광지영과 오명전 2013 ; 이명곤 등 2013).

$$AH = \alpha + \beta_1 IC + \beta_2 BIG + \beta_3 SIZE + \beta_4 ROS + \beta_5 ROA + \beta_6 DR + \beta_7 FB + \beta_8 CR + \beta_9 GRS + \beta_{10} FB + \beta_{11} LOSSDUM + \beta_{12} FOWN + \beta_{13} FIRST + \varepsilon \quad \text{모형(1)}$$

$$EF = \alpha + \beta_1 GROUP + \beta_2 BIG + \beta_3 SIZE + \beta_4 ROS + \beta_5 ROA + \beta_6 DR + \beta_7 FB + \beta_8 CR + \beta_9 GRS + \beta_{10} FB + \beta_{11} LOSSDUM + \beta_{12} FOWN + \beta_{13} FIRST + \varepsilon \quad \text{모형(2)}$$

$$EF = \alpha + \beta_1 AH + \beta_2 BIG + \beta_3 SIZE + \beta_4 ROS + \beta_5 ROA + \beta_6 DR + \beta_7 FB + \beta_8 CR + \beta_9 GRS + \beta_{10} FB + \beta_{11} LOSSDUM + \beta_{12} FOWN + \beta_{13} FIRST + \varepsilon \quad \text{모형(3)}$$

<변수설명>

- EF =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있으면(감리 지적) 1, 그렇지 않으면 0 ;
- IC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1, 검토의견이 적정이면 0 ;
- AH = 감사투입시간의 자연로그값 ;
- GROUP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서 감사투입시간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면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면 0 ;
- BIG = 대형회계법인이면 1, 중소형회계법인이면 0 ;
- SIZE = 총자산에 자연로그 취한 값 ;
- ROS = 당기순이익/매출액 ;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 DR(Debt Ratio)=총부채/자기자본 ;
- FB(Financial expenses to total Borrowings)=금융비용/총부채 ;
- CR(Current Ratio)=유동자산/유동부채 ;
- GRS(Growth of Rate of Sales)=전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 RIA(Receivables and Inventory to total Assets)=(매출채권+재고자산)/총 자산 ;
- LOSSDUM=과거 3년간 당기순손실을 경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
- FOWN = 외국인 지분율 ;
- FIRST = 외부감사인이 초도감사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이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있는지 여부(EF)에 대한 측정치인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공시된 회계감리결과제재 내역을 확인하여 감리지적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변수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IC)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에서 공시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부감

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정보를 입수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의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시작한 2004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인 2005년 회계연도부터 최근 회계연도인 2014년 회계연도까지의 기간이다. 감사투입시간 자료는 TS2000 시스템에서 입수하였으며, TS2000 시스템에서 감사시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감사시간 단위가 ‘시간’이 아닌 ‘일’ 또는 ‘월’인 자료는 자료에서 제외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 (1) 산업분류 상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회사
- (2) 신용평가정보(주)의 KIS VALUE에서 기업의 재무정보 입수가 가능한 회사
-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회사
- (4) TS2000 시스템에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감사투입시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회사

위에서 설명한 선정기준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표본을 선정하는 세부 내역이 아래의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이 총 12,766개(기업-연도)이다.

<표 1> 표본선정기준에 따른 최종 표본수

구 분	표본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 및 코스닥 등록회사 (금융업 제외)	16,257
DART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회사	(110)
자본잠식 회사	(168)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공시된 회계감리결과 제재 공시일이 해당 회사의 결산월 기준 6개월의 기간에 포함된 회사 ¹⁾	(16)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자료를 KIS-VALUE에서 입수할 수 없는 회사	(2,155)
TS2000에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에 투입한 감사시간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된 기업	(1,042)
최종 표본수	12,766

1)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수행한 후 최종 제재가 공시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회계감리제재가 공시된 경우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감리제재결과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아래 <표 2>는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결과 제재를 받은 기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를 보여준다.

동 기간 동안 총 표본 중 약 1.50%에 해당하는 191개의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결과 제재를 받았으며, 약 1.29%의 기업(총 165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연도별 감리지적기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기업

연도	회계감리 제재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기업			
	감리지적	감리지적비율	전체기업수	적정	비적정	비적정비율	소계
2005	22	2.22%	990	977	13	1.31%	990
2006	17	1.62%	1,052	1,023	29	2.76%	1,052
2007	24	2.04%	1,179	1,158	21	1.78%	1,179
2008	35	2.88%	1,215	1,186	29	2.39%	1,215
2009	35	2.85%	1,228	1,208	20	1.63%	1,228
2010	30	2.25%	1,332	1,313	19	1.43%	1,332
2011	12	0.88%	1,361	1,355	6	0.44%	1,361
2012	11	0.78%	1,413	1,408	5	0.35%	1,413
2013	5	0.35%	1,441	1,429	12	0.83%	1,441
2014	0	0.00%	1,555	1,544	11	0.71%	1,555
Total	191	1.50%	12,766	12,601	165	1.29%	12,766

1) 감리지적비율 : 총 기업수(총 대기업수, 총 중소기업수) 대비 감리지적기업 비율

3. 대응표본의 선정

감리지적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할 경우, 감리지적기업에 대한 대응표본인 감리미지적기업 표본에 대한 샘플의 편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감리제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리지적기업에 대응되는 감리미지적기업을 선정하는 정확한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상에 선정된 기업 중 감리결과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을 대응표본에 포함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대응표본을 수집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세부적인 기업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회계감리를 수행한 총 기업수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제재를 받은 기업만 발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리지적 기업 표본 및 대응표본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감리지적기업 표본과 감리미지적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박재완 등 2009 ; 김영철 등 2012 ; Ettredge et al. 2008)에서 적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응표본으로서의 감리미지적기업 표본을 선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을 따라서, 감리지적기업과 ① 동일한 회계연도, ② 동일한 산업분류, ③ 동일한 세전이익의 방향성²⁾, ④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감사인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형회계법인으로 구분), ⑤ 유사한 규모³⁾의 감리미지적된 회사들 중에서 감리지적된 기업 수의 5배수⁴⁾를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단일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수행한다. 동일한 회계연도, 동일한 산업, 동일한 세전이익의 방향성, 유사한 기업규모를 대응표본 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회사의 사업환경과 성과가 유사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슷한 재무제표의 왜곡사항(감리지적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며, 회계법인의 감사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있을 경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회계법인 여부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위에서 기술한 대응표본 선정방법을 적용하여 5배수로 선정된 대응표본은 총 694개이며, 회계감리 제재를 받은 총 191개의 기업이 연구표본으로 사용된다. 대응표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응표본 선정이 가능한 감리미지적기업만을 대응표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배수의 대응표본 개수보다 적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연구모형에 사용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아래 <표 3>에 정리하였다. 종속변수 감리지적여부(EF) 평균은 약 1.5%이며 연구대상기간인 2005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총 12,766개의 표본 중 평균 1.5%인 191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결과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변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은 12,766개의 전체표본 중 약 1.3%인 165개의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것을 의미한다.

2) 세전이익의 방향성은 0보다 크면 양(+) 또는 0보다 작으면 음(-)의 값으로 구분한다.

3)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기말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4)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3배수 대응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배수 대응표본을 사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샘플수 제한으로 인하여 회귀분석 결과에서 생략되는(omitted) 주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5배수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표 3〉 변수별 기술통계량(전체표본 대상)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EF	0.015	0.121	0	0	1
IC	0.013	0.113	0	0	1
AH	6.750	0.754	4.605	6.631	10.783
BIG	0.571	0.495	0	1	1
SIZE	25.798	1.456	21.118	25.504	32.731
ROS	0.017	2.724	-40.067	0.035	184.934
ROA	0.004	0.197	-6.295	0.031	3.364
DR	1.112	2.462	0.001	0.673	115.009
FB	0.027	0.024	0	0.025	0.662
CR	3.121	11.916	0.002	1.559	743.663
GRS	0.212	4.732	-0.999	0.059	386.593
RIA	0.263	0.159	0	0.250	0.910
LOSSDUM	0.406	0.491	0	0	1
FOWN	7.590	12.468	0.010	1.840	89.730
FIRST	0.205	0.404	0	0	1

1) 변수설명

- EF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있으면(감리 지적) 1, 그렇지 않으면 0 ;
 IC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1, 검토의견이 적정이면 0 ;
 AH =감사투입시간의 자연로그값 ; SMALL=중소기업이면 1, 대기업이면 0 ;
 BIG =대형회계법인이면 1, 중소형회계법인이면 0 ;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 취한 값 ;
 ROS =당기순이익/매출액 ;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DR=총부채/자기자본 ;
 FB =금융비용/총부채 ; CR=유동자산/유동부채 ;
 GRS =전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RIA =(매출채권+재고자산)/총 자산 ;
 LOSSDUM=과거 3년간 당기순손실을 경험한 기업은 1, 그렇지 않으면 0 ;
 FOWN =외국인 지분율 ; FIRST=외부감사인이 초도감사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감사투입시간을 나타내는 AH는 평균 6.75로서 외부감사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평균 약 1,282 시간, 그리고 중위수는 6.63으로 약 758시간을 투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는 구분하여 주는 SMALL 변수는 총 표본 중 평균 40.8%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준다. 대형회계법인 변수(BIG)는 평균 57.1%로써, 유가증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중 57.1%가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대상 총 표본에 선택된 기업들의 기업규모 변수인 SIZE는 평균 25.798으로서 금액적인 수치로는 약 1,599억원, 중위수는 25.504로서 약 1,192억원인 것을 보여준다. ROS와 ROA는 각각 평균값이 1.7%와 0.4%인 것을 볼 수 있다. 표본기업들의 주요한 재무비율 변수인 부채비율(DR)은 평균 111%, 금융비용부담율(FB)은 평균 2.7%, 유동비율(CR)은 평균 312%로 나타났으며, 또한 표본기업들의 매출액성장율(GRS)은 평균 약 21.2%의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약 40.6%의 기업이 과거 3년의 기간 동안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지배구조 대용치인 외국인지분율(FOWN)은 평균 7.59%로서 유가증권/코스닥 기업들에 대하여 외국인 약 7.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 중 20.5%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이 변경된 것을 보여준다.

<표 4>는 분석표본과 5배수 대응표본 대상으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과 종속변수 감리지적여부(EF)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여준다. 감사투입시간(AH)과 IC 및 EF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5배수 대응표본 대상 N=88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EF	1															
2. IC	0.166 ^{***}	1														
3. AH	-0.007	-0.040	1													
4. SMALL	0.078 ^{**}	0.131 ^{***}	-0.499 ^{***}	1												
5. BIG	-0.049	-0.07 ^{**}	0.527 ^{***}	-0.431 ^{***}	1											
6. SIZE	-0.006	-0.113 ^{***}	0.804 ^{***}	-0.671 ^{***}	0.513 ^{***}	1										
7. ROS	-0.172 ^{***}	-0.204 ^{***}	0.177 ^{***}	-0.255 ^{***}	0.204 ^{***}	0.252 ^{***}	1									
8. ROA	-0.188 ^{***}	-0.303 ^{***}	0.194 ^{***}	-0.314 ^{***}	0.252 ^{***}	0.321 ^{***}	0.726 ^{***}	1								
9. DR	0.121 ^{***}	0.078 ^{**}	0.072 ^{**}	-0.042	0.037	0.094	-0.101 ^{***}	-0.219 ^{***}	1							
10. FB	0.131 ^{***}	0.069 ^{**}	-0.028	0.219 ^{***}	-0.129 ^{***}	-0.128 ^{***}	-0.241 ^{***}	-0.387 ^{***}	0.091 ^{***}	1						
11. CR	0.046	-0.007	-0.078 ^{**}	0.076 ^{**}	-0.061 [*]	-0.087 ^{***}	-0.004	-0.013	-0.053	-0.073 ^{***}	1					
12. GRS	-0.010	-0.011	-0.007	-0.037	0.034	0.053	0.025	0.026	-0.007	0.107 ^{***}	-0.005	1				
13. RIA	0.014	-0.029	-0.078 ^{**}	-0.010	0.029	-0.092 ^{***}	0.196 ^{***}	0.165 ^{***}	0.011	-0.153 ^{***}	-0.075 ^{***}	-0.011	1			
14. LOSSDUM	0.123 ^{***}	0.147 ^{***}	-0.172 ^{***}	0.271 ^{***}	-0.189 ^{***}	-0.296 ^{***}	-0.250 ^{***}	-0.375 ^{***}	0.142 ^{***}	0.351 ^{***}	0.022	0.018	-0.064 [*]	1		
15. FOWN	-0.056 [*]	-0.037	0.376 ^{***}	-0.280 ^{***}	0.255 ^{***}	0.405 ^{***}	0.114 ^{***}	0.152 ^{***}	-0.029	-0.180 ^{***}	-0.005	-0.019	-0.104 ^{***}	-0.171 ^{***}	1	
16. FIRST	0.065 [*]	0.029	-0.088 ^{**}	0.098 ^{***}	-0.096 ^{***}	-0.124 ^{***}	0.016	-0.023	0.038	0.002	0.061 [*]	0.065 [*]	0.012	0.036	-0.044	1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다변량 회귀분석

감리지적기업을 연구(분석)표본으로 하고 선정된 대응표본(감리미지적기업)을 대상으로 위에 서 기술한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5배수를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가. 가설 1의 검증

아래 <표 5>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가설 1 검증을 위한 연구변수 IC에 대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

<표 5> 가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Variable	Pred. sign	5배수		
		Coef.	t-value	p-value
Intercept		-3.889	-10.24***	0.000
IC	+	0.121	1.67*	0.096
BIG	+	0.278	6.88***	0.000
SIZE	+	0.399	26.38***	0.000
ROS	-	0.024	1.19	0.234
ROA	-	-0.207	-2.34**	0.019
DR	+	-0.007	-2.17**	0.030
FB	+	2.153	4.10***	0.000
CR	-	0.000	-0.24	0.808
GRS	+	-0.012	-15.48***	0.000
RIA	+	0.064	0.52	0.607
LOSSDUM	+	0.080	2.01**	0.045
FOWN	+	0.004	3.32***	0.001
FIRST	+	0.044	1.20	0.229
F		155.61		
Prob>F		0		
R-squared		0.6865		
N		885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음.

따라서, 이 분석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과 비교하여 감사투입시간이 유의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적정의견의 기업과 적정의견의 기업 사이에 감사투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설정한 가설 1을 기각하는 연구결과라고 보여지며, 이는 연구자의 가정과는 다르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2에 대하여 검증한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을 감소시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설 2의 검증

다음 <표 6>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어서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 기업그룹이 적정 검토의견인 기업그룹과 비교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킴으로서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기업 수준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표 6>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어서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킨 기업그룹이 적정 검토의견인 기업그룹과 비교하여 감리지적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절차를 수행한 후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켜 입증감사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적정 검토의견인 기업그룹 수준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에서의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지만 감리지적 가능성을 적정의견 기업 수준까지 낮출 만큼 감사투입시간을 충분히 증가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손성규와 정기위 2009; 최승호 2009; 양준선과 곽재우 2012; 손성규 등 2012)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만약, 충분하고 적절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을 적절히 발견하여 감사위험을 충분히 낮추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가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 및 감사투입시간과 감리지적여부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Variable	Pred. sign	5배수		
		Coef.	z-value	p-value
Intercept		-7.725	-3.82***	0.000
GROUP	+	1.175	2.57***	0.010
BIG	-	-0.230	-1.09	0.275
SIZE	-/+	0.213	2.71***	0.007
ROS	-	-0.192	-1.88*	0.060
ROA	-	-0.402	-0.92	0.358
DR	+	0.028	1.03	0.301
FB	+	7.102	2.23**	0.026
CR	-	0.011	2.77***	0.006
GRS	+	-0.018	-1.52	0.127
RIA	+	1.098	1.89*	0.059
LOSSDUM	+	0.306	1.33	0.183
FOWN	-	-0.011	-1.15	0.248
FIRST	-	0.365	1.81*	0.071
Wald chi2		54.69		
Prob>chi2		0		
Pseudo R ²		0.0677		
N		867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음.

단, GROUP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비적정인면서 감사투입시간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면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면 0.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순이익율(ROS)과 총자산순이익율(ROA)은 음(-)의 부호로서 수익성이 좋을수록 재무제표에 왜곡사항이 감소한다는 결과이지만, ROA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 다른 재무지표인 DR와 FB의 회귀계수는 양(+)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리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DR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유동비율(CR)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회계감리 지적사항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비율 변수에 대한 결과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할수록 감리지적 사항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존연구(손성규 등 2012 ; 이명곤 등 2013 ; Krishnan 2005 ; Doyle et al. 2007)와는 다른 결과로 보여진다. 매출성장율(GRS)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주며, 사업구조의 복잡성(RIA) 변수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여줌으로써 사업구조가 복잡할

수록 감리지적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인 외국인지분율(FOWN) 변수의 경우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상한대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회계부정의 확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연구결과(Krishnan, J. 2005 ; 박재완 등 2009 ; 김용식과 황국재 2010 ; 광지영과 오명전 2013)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교체여부 변수인 FIRST는 예상한 음(-)의 부호와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초도감사인의 경우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서, 이 결과는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가설(Auditor Expertise Hypothesis)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외부감사인이 동일 기업에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감사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설 3의 검증

본 절에서는 분석표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그룹과 비적정인 그룹으로 나누어 감사투입시간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3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리지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 입증감사절차를 확대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표 7>에 기술되어 있다.

가설 3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감사투입시간(AH) 변수이다. <표 7>에서 보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그룹의 감사투입시간(AH)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비적정 그룹의 AH에 대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그룹과 다르게 비적정 검토의견 기업그룹은 감사투입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한 외부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 증가시켜 입증감사절차를 확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감리지적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결과는 가설 3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로서, 최소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 기업 그룹에 대하여는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감리지적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 검토그룹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7〉 가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구분 감사투입시간과 감리지적여부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Variable	Pred. sign	적정 검토의견			비적정 검토의견		
		Coef.	z-value	p-value	Coef.	z-value	p-value
Intercept		-8.111	-3.50***	0.000	-83.822	-2.77***	0.006
AH	-	-0.192	-0.84	0.399	-2.975	-1.95*	0.052
BIG	-	-0.150	-0.69	0.493	-0.277	-0.13	0.895
SIZE	-/+	0.276	2.22**	0.027	4.173	2.84***	0.005
ROS	-	-0.213	-1.98**	0.048	0.615	1.62	0.104
ROA	-	-0.605	-1.34	0.182	-4.118	-1.60	0.109
DR	+	0.024	0.88	0.376	0.313	1.32	0.187
FB	+	7.198	2.19**	0.028	-47.288	-1.65*	0.098
CR	-	0.011	2.77***	0.006	-0.054	-0.40	0.691
GRS	+	-0.020	-1.66*	0.097	0.079	0.19	0.848
RIA	+	1.155	1.96**	0.050	3.964	0.84	0.403
LOSSDUM	+	0.234	1.02	0.306	(omitted)		
FOWN	-	-0.014	-1.26	0.208	0.055	0.35	0.723
FIRST	-	0.457	2.26**	0.024	-0.790	-0.50	0.617
Wald chi2		49.44			17.75		
Prob>chi2		0			0.1234		
Pseudo R ²		0.0611			0.4582		
N		840			45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음.

V. 결 론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하여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통해서도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미국의 SOX제도는 감사의견을 강제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상대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낮은 검토의견을 요구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미국 제도와의 차이점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 및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여부(감리지적)와의 관련성,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과 감사투입시간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보다 감사투입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평가하여 비적정 검토의견을 보고한 경우, 입증감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늘렸지만 감리지적 가능성을 적정검토의견 기업의 수준까지 낮출 만큼 충분하게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에 따라서 입증감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시켰지만,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인은 비적정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감리지적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이와는 달리 감사투입시간이 증가되어도 감리지적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전체표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지만, 최소한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 및 재무제표에 대한 입증감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라서 감사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특성, 한계점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이 아닌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외부감사인인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감독기관에서는 감사의견으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를 회계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 지표 중의 하나로 고려함으로써 감리지적 대상선정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고려한다고 발표한 것은 감독기관에서도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근거이며, 감사의견 제도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러한 감독기관의 회계감리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감리지적기업을 분석표본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감리지적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샘플의 편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리지적기업 표본과 이에 대한 대응표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지적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대응표본 선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응표본에 대한 샘플의 편의성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두 번째 한계점은 감리지적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표본수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지영 · 오명전. 2013. 기업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327-351
- 김영철 · 강정연 · 고종권. 2012. 감리지적기업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및 실제이익조정.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 191-224
- 김용식 · 황국재. 2010.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 주식소유구조와 이사회 특성 중심으로. 회계연구 제15권 제2호 : 29-67
- 마희영 · 박성중 · 허광복 · 이만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2호 : 91-113
- 박재완 · 이상철 · 정갑수. 2009. 감리지적 기업의 경영자,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 특성. 회계와 감사 연구 제49호 : 163-203
- 배한수 · 배병한. 2012.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호작용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63-82
- 손성규 · 정기위.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의 발생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 221-249
- 손성규 · 오윤숙 · 채수준. 2012. 불성실공시지정 및 부과벌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1-40
- 신현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107-128
- 이명곤 · 이세철 · 장석진. 200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73-104
- 이명곤 · 조한석 · 장석진. 2013. 계속감사기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2권 제1호 : 203-232
- 최 관 · 백원선. 1998.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33-161
- 최승호 · 최우중. 2010. 내부통제 중요 취약점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후 4년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9권 제3호 : 31-53
- 최정운 · 이재은 · 배길수. 2014. 감리지적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감리조치 전후 기간 및 사유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217-253
- 최현정 · 이호영 · 조은정. 2011.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와의 관계가 감사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6호 : 179-21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200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2005. 6. 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5.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05. 6. 28.). 한국공인회계사회.
- Ashbaugh-Skaife, Daniel Collins and William Kinney Jr.. 2007. The discovery and reporting

-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 166—192
- Doyle, J., W. Ge, & S. McVay. 2007.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ume 82 Issue 5 : 1141—1170.
- Hogan, C. E. and M Wilkins. 2005.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and Texas A&M University
- Jeffrey Doyle, Weili Ge and Sarah McVay.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 193—223
- Krishnan, J.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Volume 80 Issue 2 : 649—675
- Lineke Sneller and Henk Langendijk. 2007. Sarbanes Oxley Section 404 Costs of Compliance : a case study. *Corporate Governance :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 15 Issue 2 : 101—111
- Michael L Ettredge, Lili Sun, Picheng Lee, Asokan A Anandarajan. 2008. Is earning fraud associated with high deferred tax and/or book minus tax level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ume 27 Issue 1 : 1—33

Correlation of Review Opinion o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and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Sangok Oh* · Kwanghee Cho**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ACS has actually influenced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audit hours spent for external audit service and the effects of IACS non-qualified review opinions. Furtherm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non-qualified review opinion regarding IACS and the audit hours together on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show, external auditors that expressed non-qualified review opinion on a company's IACS report usually spent more hours on financial statements audit, which means that external auditors considered the review opinion on the IACS in planning substantive audit scope and expected audit hours. Additionally, the analysis found that, although more audit hours were spent for external audit service considering non-qualified review opinion on IACS,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did not reduce, which may mean that external auditors could not increase audit hours enough to significantly reduce material misstat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The key root causes for this result might be that there is legally less responsible 'review opinion' on the IACS scheme and that the regulator restrictively allowed external auditor to provide advisory on IACS establishment for the audit client, which may impair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 in expressing the review opinion on IACS. Lastly, for the company whose review opinion on IACS was non-qualified, the more audit hours that were spent, the less the company is subject to FSS enforcement action due to material misstat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This result means, IACS could be effective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t least for the company whose review opinion on IACS was non-qualified.

〈Key words〉 Internal Control, IACS, SOX, Audit Hours, Financial Statements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Dongguk University, oso5457@dongguk.edu,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Dongguk University, phdcho@dongguk.edu, Corresponding Author